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82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김정태, 권영희, 임종국,  
이호대, 경만선, 김경영,  
김화숙, 박순규, 송재혁,  
이영실, 이정인 의원 (11명)

## 1. 제안이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보다 지속가능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을 요구받고 있음.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명료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화조성” 분야 등으로 구분 및 용어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근거 명확화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 근거 마련하여 서울특별시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의 구조를 체계화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2조)
-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문화조성” 분야 등으로 구분 및 용어 정비(안 제4조)
-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 규정과 위원 구성의 성비 균형을 이루도록 함. (안 제9조)
- 라.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규정 신설 (안 제12조)
- 마.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3조)
- 바. “장” 삽입을 통해 조례 구조 체계화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의 제목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을 삽입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8조 앞에 “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삽입한다.

제9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 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 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 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 업을 위탁할 수 있다.</p> <p>③ &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b>제1장 총칙</b></p> <p>제2조(시장의 책무) ① ----- ----- ----- ----- ----- ----- ----- ----- ----- ----- -----</p> <p>② ----- -----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 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u>시행계획</u>”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 시의회(이하 “<u>시의회</u>”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b></p> <p>제4조(기금의 용도) ----- -----</p>

현 행	개 정 안
<p>1.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p>	<p>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p>
<p>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p>	<p>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p>
<p>3.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p>	<p>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p>
<p>4.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p>	<p>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p>
<p>5.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p>	<p>&lt;삭 제&gt;</p>
<p>6. 그 밖에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지원</p>	<p>&lt;삭 제&gt;</p>
<p>&lt;신 설&gt;</p>	<p>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20명</u> 이내로 구성 한다.</p> <p>②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③ (생 략)</p> <p><u>제9조의2</u> (생 략)</p> <p><u>제10조</u>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 <u>30명</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u></p> <p>④ <u>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⑤ (현행 제3항과 같음)</p> <p><u>제10조</u> (현행 제9조의2와 같음)</p> <p><u>제11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p> <p><b><u>제4장 보칙</u></b></p> <p><u>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시장</u> <u>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172 309 325 344">&lt;신 설&gt;</p> <p data-bbox="154 645 408 680"><u>제11조</u> (생 략)</p>	<p data-bbox="823 309 1465 595"><u>제13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시장은 제 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 data-bbox="823 645 1286 680"><u>제14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p>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제4조(기금의 용도), 제11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제12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기 편성하여 추진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관련 조항		
		총계	15,050			
		소계	15,000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	3,000	제4조 제1호 가목·나목		
		서울-평양(경평) 축구대회 재개	2,400			
		평양 하수도 및 하수도 개량	1,000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비예산			
		평양 산림녹화 지원	213			
		서울-평양 간 동식물 교류 및 협력	255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 협력	비예산			
		평양 대중교통 운영체제 협력	비예산			
		서울-평양 문화 예술 교류	3,180			
		글로벌 도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1,000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공동 추진	문화·체육·역사관광 등 사회문화교류 도시재생·교통·도로·도시안전 등 도시인프라 협력 산림·환경·동식물 등 경제개발 협력 보건의료, 재난재해 구호 등 인도적 지원	2,500	제4조 제1호 가목·나목·다목, 제11조		
		통일기반 조성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400	제4조 제2호 가목, 제11조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200	
			6·15 선언 및 10·4 기념행사 지원		300	제4조 제2호 나목, 제11조
	민관 소통 채널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40			
		민간 차원의 통일기반조성사업 지원	100			
	기타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 등	312	제4조 제4호		
		국외업무여비	50	제4조 제5호 가목		
민간인국외여비		50	제12조			
		소계	50			
기본 경비	기금관리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비용 등 일반운영비	50	제4조 제3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81,000천원(연평균 16,2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6,2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0~2024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수가 조례 개정예 따라 10명 확대(20명→30명)됨에 따라 10명분의 운영비용(참석수당 및 업무추진경비)이 추가로 소요
- 회의 개최횟수는 2018년 연간 회의 개최횟수 9회 적용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81,000천원(연평균 16,200천원)

- 총비용 = 위원회 운영비용(10명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비용(제9조)	16,200	16,200	16,200	16,200	16,200	81,000
	소계(b)	16,200	16,200	16,200	16,200	16,200	81,000
□ 총 비용(b-a)		16,200	16,200	16,200	16,200	16,200	81,000

- 위원회 참석수당 : 수당단가 150천원 × 10명 × 연 9회 × 5년 = 67,500천원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2시간 초과 150천원 적용

- 업무추진경비 : 업무추진비단가 30천원 × 10명 × 연 9회 × 5년 = 13,500천원

※ 업무추진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이내로 가정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담 당 관

조사분석팀장

예산분석관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여차민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